기업윤리의 제고방안

-BIS와 OECD 결의안을 중심으로-

To Enhance Corporate Code & Ethics

-With AQ Special Interest in the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Corporate accounting in line with BIS and OECD Regulation-

이 재 웅 (Lee, Jai Woong)*

Ⅰ. 머 리 말

기업개념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함」을 의미한다. 즉, 기(企)는 기획(planning), 업은 사업을 말한다. 업의 어원은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다. 또 시편 33장 12절에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으로 「온유하게」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같이 윤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비추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기업의 개념은 「재화와 용역(service)의 생산과 유통을 행하는 계속적 영리관계 단위」이다. 한편, 법학적 기업의 개념은 「기획적, 계속적 영리관계 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은 ① 영리기업의 원칙, ② 시장 관련의 원칙(market-oriented), ③ 계속 기업(going-concern)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1)]

그런데 현대기업은 사회의 중추적 영역에서 막중한 역활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고 고도성장을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다원화 되고, 근대에는 기업거래 활동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찌기 1920년 독일의 레테나우(Rettenau)교수가 「기업자체」(Unternehemen an sich)사상을 주장한 이래 기업은 그 자체가 구성원으로 부터 독립된 존재이며, 그 구성원의 자의에 대하여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호가 지속되야 한다는 이론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은, 첫째, 대내적 책임으로서 기업내부의 많은

---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연구교수(經營學 · 博)

1) 이재웅, 「기업법 원론」, 법문사, 1997, pp. 4~5.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출자자, 종업원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둘째, 기업은 대외적으로 기업과 거래하는 소비자, 기업이 발생시킨 공해로 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등에 대한 책임도 있다.[2]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이행시키고, 기업윤리를 제고시키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 기업 스스로가 기업내부로 부터 자율적으로 기업내부의 변화를 통하여 기업윤리를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노벨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기업내부의 동기부여」와 「통제」를 통하여 기업윤리를 제고시키자는 주장이 그것이다.[3]

둘째 방안은 정부에 의한 규제이다. 미국헌법은 연방권과 주(州)권이 동등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연방정부의 규제입법이 수십가지가 되어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그 범위는 교역, 항공, 증권, 금융, 환경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도 수많은 기업규제입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윤리는 제고되지 않고, 특히 작금 한국에서는 기업의 비자금문제를 비롯하여 정경유착이 크나큰 사회문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감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겠다 가입한 OECD 각료 이사회가 「뇌물방지관련 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원칙」에 합치하게 회원국 법규 및 관행을 고치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BIS(국제결제은행)은 1996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1997년 12월말 부터 시행에 옮기도록 합의하였다. 수정의 주요한 내용은 파생상품(derivatives)이나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모두 공시(disclosure)하여 재무제표사항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비자금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적 차원으로 승화(昇華)되었다. 만일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은 국제신인도가 추락하여 해외로 부터의 차입등이 작금과 같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급한 기업윤리의 제고이유가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이 달려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Ⅱ. 기업내부로 부터의 변화

1. 이익추구와 사회적 책임

기업이 비 윤리적 행위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기적인 이익추구이다. 기업은 앞서 바와 같이 기업법상 「기획적, 계속적, 영리적 관계단위」이므로 영리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윤리문제나 사회적 책임

2) 이재웅, 전게서, pp. 27-31.
3) T. 도날드슨, 류장선 역, 「기업윤리」, 법문사, 1990, p. 261.

을 망각하기 일쑤이다.[4]

이익동기 부여는 효율성과 동기부여의 제고하는 면에서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임금을 고정시키고, 위험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정화시설을 하지 않아서 낙동강을 페놀로 오염시킨 기업, 교량공사를 불실하게 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시킨 기업, 백화점의 날림공사와 관리불충분으로 붕괴의 위험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기업, 악천후와 무리한 운항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해운회사나 항공회사등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에 식상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여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기업의 영리추구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의 갈등은 기업이익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기업이 이익목표를 제고하기 보다는 보다 더 차원의 높은 목표, 즉 도덕적, 윤리적 목표를 기업의 의사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로는 「소유와 경영」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제 아무리 우량기업이요, 상장기업요. 세계의 100위권 이내에 외형이 들어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은 대주주가 결정하지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표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사장이 결정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막적으로는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이나, 경영관리실이나 그 명칭은 여하턴 간에 대주주의 측근구룹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행하여 지는 것이다.

2. 시스템의 결여와 Corporate Governness

이렇듯 기업의 비윤리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이익목표 추구를 지상과제로 하는 기업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은 윤리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으로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윤리제고를 위하여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나 죤 래드(John Ladd)등은 기업조직 이론적 입장에서 기업을 「특정목표(이익)의 추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직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래드는 기업은 이익추구라는 특정목표 추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기업이 최소한의 도덕적 행위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래드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다고 할

---

4) 예컨대 모 중간 기업집단의 창업자 격언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해결)한다(Moneny Talks)"이다. 또한 종업원(경영진 포함)의 동기부여로 내세운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은 "정글의 법칙(Law of Jungle)"이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노루가 깨어나면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먹이가 됨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가 깨어나면 가장 느린 노루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굶어 죽음을 안다. 네가 사자이건 노루이건 상관이 없다. 태양이 떠 오르면 너는 그저 뛰어야 살아 남는다."

이재웅, 「첫닭 울때, 새벽돌 한알」, 삶과 꿈사, 1996, p. 277 참조.

수 없으나 기업의 비윤리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단순한 (이익)목표 추구의 수단인 한 그들이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즉, 기업은 그 자체의 논리적 결함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합당한 행위(이익추구 행위)는 도덕적 원칙에 따른 행위와는 영원한 갈등을 갖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목표만 극렬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정직이라든가 상호존중등의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지향적인 조직설계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눈을 멀게 한다.[5]

T. 도날드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눈이 멀게 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 기업이 W, X, Y, Z라는 네가지 목표를 주어진 시간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되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W는 최대이익, X는 적십자사에 매년 5만달러 기부, Y는 5년내에 5%의 사장점유율(Market Shave)의 확대, Z는 부채에 대한 자본비율 제고, 바꾸어 말하면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감소라고 가정하자. 마지막으로 기업내의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은 기업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하는 견지에서 평가받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러한 기업은 그 검토수단의 덕택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이익과 시장점유율을 제고 시키며, 적십자사에 5만불을 기부하는데 성공하였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기업이 공정, 정직, 종업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등의 도덕적 원칙을 따랐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기업은 도덕적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한정적(限定的)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6]

미국의 기업윤리수준이 이 정도라면 한국기업의 수준은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한국기업의 현황은 지난 10월 15일 91년 경영대상, 최우수기업상, 1996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태일정밀이 부도유예 협약을 신청하였다. 그 원인은 국내 최대의 컴퓨터 부품업체의 「명예」에 만족치 않고,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하여 동물원, 터미날사업, 대구종합금융의 M & A까지 시도하다가 좌초하고 말았다. 태일정밀 역시 진로, 대농, 기아, 쌍방울처럼 단기성 부채인 제2금융권의 핫 · 머니(Hot Money)를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에 투입한 「무계획적」 기업경영으로 부도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아자동차를 주력으로 한 기아그룹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것이다. 기아그룹이 만일 「이익의 극대화」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 생산이라는 본업에만 치중하였던 들, 진로는 술생산 특히 일본에 까지 호평받던 소주에만 전념했던 들, 해태도 제과, 음료생산에만 몰두했던 들,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두가 「이익의 극대화」로 기업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등한히 하여 소액 예금자가 푼푼이 모은 돈을 가진 「은행의 불실」을 촉진하고,

5) T. 도날드슨 저, 「기업윤리」, 법문사, 1990, p.264.

6) T. 도날드슨, 전게서, pp. 264~267.

기업자신도 패망케한「의사결정 및 통제 시스템의 결여」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참고로 한국제조업체의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96년말로(97년 최근에는 물론 더 높아졌을 것임) 317%로 미국의 159%, 일본의 206%, 경쟁국인 대만의 85%보다 2배 내지 3.7배나 높다. 50대기업중 삼성(268%), 롯데(192%), 코오롱(316%), 동부(253%), 동국제강(218%), 삼양(289%), 동양화학(159%), 새한(280%) 한국제조업 평균치를 하회(下廻)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즉, 한국의 기업들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인 은행,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 그리고 환차손이 높은 외국에서의 차입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금융부담비율은 5.7%로 미국의 0.3%, 일본의 1.3%, 대만의 2.2%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표1 참조〉.

〈표 1〉 주요그룹 재무현황 ('96년 기준)

(단위=억원 · %)

그 룹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매출경상이익률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
삼 성	601,144	1,975	0.4	268.2	3.3
현 대	680,092	1,764	0.8	439.1	3.9
대 우	382,472	3,561	1.1	337.3	5.1
L G	466,744	3,602	6.9	346.5	3.8
한 진	87,044	1,913	2.2	556.9	6.1
기 아	120,981	1,294	0.9	523.6	6.5
쌍 용	194,468	982	0.3	409.0	3.8
선 경	266,105	2,923	1.9	385.0	4.1
한 화	96,869	1,849	11.8	778.2	6.2
한 라	52,941	229	0.6	2,067.6	7.6
삼 미	14,923	2,520	16.5	3,329.0	18.6
한 일	13,011	1,198	7.8	563.2	13.6
진 로	14,826	1,565	9.8	8,598.7	21.2
롯 데	71,927	532	1.9	192.2	3.7
해 태	27,157	358	1.0	658.3	6.6
동 국 무 역	10,653	212	2.1	527.9	10.8
뉴 코 아	18,279	199	1.8	1,224.0	7.6
통 일	8,719	942	19.0	920.5	9.8
대 농	13,659	3,033	23.7	244.4	11.8
조 양 상 선	9,708	170	1.4	2,026.6	8.4
동 부	30,665	149	0.3	253.1	5.8

이렇듯 우리의 기업환경이 매우 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규범는 「법의 통제(Rule of Law)」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1및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의 대표적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12. 31 법률 3220호, 1990. 1. 13 전면개정)과 「소비자 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호) 등이다. 기업규제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37조 2항). 따라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영역은 규제개념에 부합되어야 되므로 우리나라 헌법에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헌법 제119조, 제127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원리 도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사기업규제의 경우는 그러하다. 이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경제, 자유경제, 계약자유의 원칙등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7]

둘째, 그 방법은 법치주의적 절차에 의하여 입법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

셋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최소한도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규제 입법은 물론이고 기존의 기업규제 입법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OECD등 선진국과 같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를 위한 기업규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미국이나 일본들 선진국에서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s' Activism)」와 「국제적 주식회사 감시(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ness)」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어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투자자)의 권익옹호와 기업의 경영적, 윤리적, 감시체계가 태동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의식하며 주식투자자, 즉 주주(특히 소수주주)들은 마음에 안들고 경영성적이 나쁜 주식은 즉석에서 팔아 버리면 되었다. 소수주주(현행 5% 이하 소유자)가 주요장부를 열람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귀찮케 여겼다. 이것이 이른 바 「월 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이라는 속칭으로 불리우는 투자관행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국제기관투자자의 등장은 이러한 주식의 대량매각은 특히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이 작은 한국등 동남아시장에서의 「시장충격(Market Impact)」으로 말미아마 스스로 주가의 폭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주가 지수 펀드(Stock Index Fund)」의 성행으로 「주가지수 펀드」에 편입된 개별주식을 대량으로 맥각하면 「주가지수」에 연동(連動)된 「펀드」가격 자체가 하락하여 미국내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불의의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농무부(Department of Labor)가 의결권도 포트포리오상의 중요한 자산(Assets)로서 인지하고

7) 이재웅, 「기업법요론」,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pp. 4041.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의견진술과 참여는 권리인 동시에 당연한 의무로 굳혀가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전례에 따라, 갈파스등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소위 Corporate Governness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의 외국인 투자비율(일본주식 보유비율)은 10% 내외에 달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도 포함될 것임)동양권의 특징인 상호주 비율은 60%로 추산하면 대주주 이외의 포트포리오 투자액은 40%이므로 그 중 4분의 1이 외국인 투자가의 판단에 좌우될 것이다(이 점 최근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순매도가 주가하락의 큰 원인의 하나인 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즉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를 일본의 경영자가 무시하는 것은 일본 증권시장의 존재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칼파스는 현재「국제 주식회사 감시계획(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ness Program)」을 실행중이며, 년말까지 일본과 독일이 타겟트일 것이다. 칼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사외비상임 이사(Disinterested Director)」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경제, 사회구조의 차이는 세계화된 갈필스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통일적 기준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사외비상임이사」를 요구하든 안하든 어떠한 측면에서든 주주의 이익 특히 소액 외국 투자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업 특히 주식회사 감시체제를 요구할 것은 틀림없다.[8]

이점 한국도 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의 비윤리적 비자금의 조성, 결합 재무제표의 비 작성,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비 시가 평가를 통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평가제도(Valuation System), 부동산 가격의 비시가 평가, 과도한 판공비, 접대비의 증빙없는 지급증에 의한 지급 등 시정할 점이 많을 것으로 안다.

Ⅲ. 기업외부(해외)로 부터의 변화

1. BIS(국제결제은행)의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

1) BIS의 공시제도와 자기자본규제 합의 배경

세계의 국제금융의 중심(center)은 미국이며, 미국의 은행경영자는 리스크에 민감하여,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자기자본 충실에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64년 증권관계의 2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가정보(時價情報)의 공시(公示: Disclosure)의무는 더욱 강화되었다.즉, 1964년부터「일반적으로 용인된 회계원칙(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Principles)」을 지키던 것이「규제목적 원칙(RAP : Regulatory AccountingPrinciples)」을 준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도「은행감독청(Currency of Controller)」뿐 아니라 은행도 상

8) 노무라 증권(주) 발생,「자본시장 Quarterly」, 1997년 여름호, pp. 4~5.

장회사이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감독위원회(SEC :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자기자본 규제등 은행의 감독이 엄격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내 서열 20위였던 프랑크린 내쇼날 은행이 1974년 파산하였고, 1984년에는 랭킹 10위내에 들었던 명문은행인 콘티넨탈 이리노이 은행까지 파산하여 연방예금공사(FDIC)법까지 개정하여 예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이르렀던데 기인한다. 특히 여기서 세계의 중앙은행의 리더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폴·볼커 의장이 미국 국내법과 관행의 개정뿐만 아니라 선진국 여러나라의 합의를 이끌도록 진력한 결과 1988년 7월 BIS는 바젤 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적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은 대장성을 중심으로 소위 「호송선 단식」 또는 「일렬횡대식」 관치금융을 일삼아 왔으나, 1992년부터 BIS자기자본 규제와 공시제도에 동참하지 않고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信認度)가 떨어져서 방대한 성장금융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의 「예금자보호주의」에서 「국내외 투자자 보호주의」로 전환하여 자기자본 규제를 국제적인 BIS기준으로 높이게 되었다. 일본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다시 태어나는 산고를 인내하여 왔다. 최근 이렇듯 대변혁을 감행하게 된 것은 노무라증권(주) 계열의 다이와(大和)은행 미국현지법인이 파생상품의 하나인 미국 재무성증권(Treasury Bill)의 부정거래 사건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파생상품(Derivatives)거래에 경종을 울리고 파생상품도 자기자본 비율에 포함시키는 BIS의 자기자본 규제와 공시제도를 충실하게 이행된데 연유한다.

우리나라는 제일은행의 한보, 기아등의 부도유예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시중은행과 종금 및 일부특수은행까지 「금융대란」에 시달리고 있어 군사문화의 유산인 관치금융과 「거함거포(巨艦巨砲)」식, 또는 「중후장대(重厚長大)」식 대기업집단의 「외형제일주의」 또는 「불꽃놀이(Fire work)」식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미 땅에 떨어진 '기업윤리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않될 심각한 시기에 봉착하고 있다.[9]

2) BIS 바젤위원회의 개정 자기자본 규제 내용

BIS의 자기자본 규제비율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자기자본 비율} = \frac{\text{자기자본} + \text{단기후순위채무}}{\text{위험가중자} - \text{단기매매목적 보유채권 및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 \text{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times 12.5\%} \times 100$$

9) 이재웅, 「외환 및 파생생품론」, 법문사, 1997, pp. 293~294.

위와 같은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8%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바젤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의 약칭)는 1986년 1월에 체결하고, 1997년 12월에 선진국 G-11회원국이 시행에 옮기게 되어 있다. 동 개정안의 정식명칭은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협약의 개정(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라고 되어 있다. 그 외에 이에 대한 부속서류의 형태로 「내부모형의 사후검증시 이용하여야할 감독지침(Supervisory Framework for the Use of "Backtesting"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l Models Approach to the Market Risk Capital Requirements)」이 발표되어 권고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BIS 자기자본구제 개정안은 요약하면, 종전의 은행의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용리스크」 이외에 「파생상품(Equity Derivatives」과 「부외거래(簿外去來 : Off-Balance Sheet Transactions)」 등을 포함한 「시장리스크(Market Risk)」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약 8%)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도표 1 및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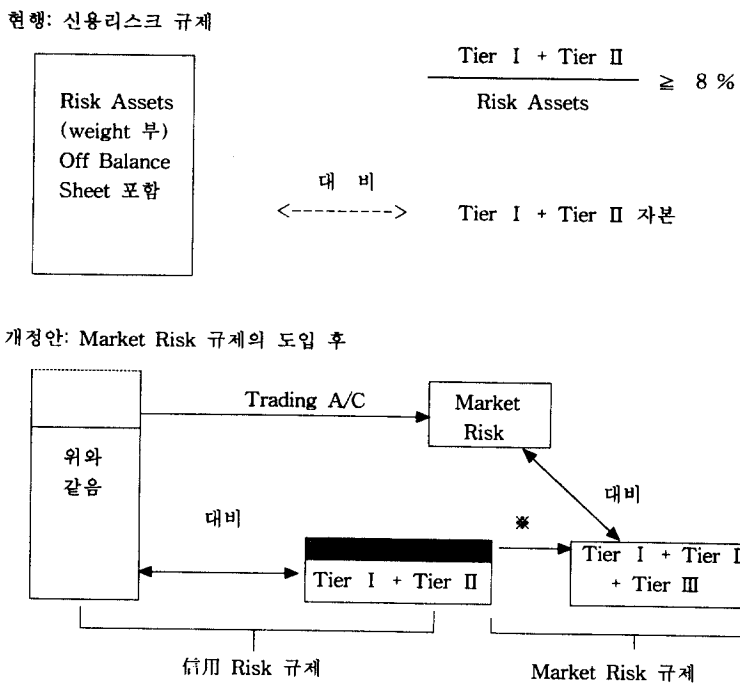

〈도표 1〉 BIS 현행 신용리스크와 개정 시장리스크의 대비도

※ 주) Trading A/C를 보유한 채권, 주식은 신용 Risk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Risk Assets 감소된다. 따라서 ▥ 부분만큼의 자기자본이 Market Risk를 cover 한다.

〈표 2〉 BIS Market Risk 규제 일람표

(1) 규제대상

현행 자기자본 비율규제(국제통일기준) 대상 :

-신용리스크 규제와 동일하며, 해외 현지법인등을 포함한 연결(또는 결합) 베이스로 적용함

(2) 대상이 될 리스크

다음에 명시한 Market Risk(금리, 주가 등 시장가격 변동에 의한 On Balance, Off Balance Sheets 쌍방의 Position에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 모두가 대상임.

1) 금리, 주식 리스크(Trading Account)

2) 외환, Commodity Risk(은행의 모든 Position)

(3) 현행 자기자본 규제와의 비표

1) 현행 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대상이며, 은행의 모든 자산(Off Balance Sheets 사항 포함)을 장부가격 또는 추정원금등을 기초로 한 Risk Assets로 환산한 후에, Risk Assets의 8%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Market Risk 규제 (Basil 위원회 개정안) 도입에 따른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으로 된 Position의 시가(時價)를 베이스로 하여 Market Risk를 측정한 후에 그 Risk와 동액이상의 자기자본 보유가 의무화 된다.

② 다만, Trading 계정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은 신용 Risk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Market Risk 규제만 행한다.

③ Market Risk만 카바할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서 Tier Ⅲ를 새로이 도입한다(도표 1 참조).

(4) Market Risk의 측정방법

다음 방법중 1개 방법 또는 두 방법의 혼합방법(부분 Model)으로 측정한다.

1) 표준적 접근법

Trading 계정등의 Position 을 Basil 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 소정의 산식에 대입함으로써 Market Risk를 산출한다.

2) 내부 Model 접근법

일정한 정성(定性)적, 정량(定量)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감독함. 즉 금융감독당국 의 승인을 얻어 은행은 Value at Risk(모든 위험이 닥쳤을 때의 최저가격)의 개념에 근거한 내부 Model을 이용하여 Market Risk를 산출함.

두 기준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성적 기준 : 적절한 Risk 관리 체제의 정비를 의무화함.

② 정량적 기준 : 각 은행의 내부 model에 의한 Risk를 측정할 때의 parameter를 통일함.

(5) 자기자본비율의 계산

1) Market Risk만을 카바할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서, 다음에 정의하는 '단기 후순위 채무(Tier Ⅲ)'을 용인함.

기간이 2년 이상인 단기 후순위 채권일 것.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특별조건(Lockin 조항) 이 부여되어 있을 것.

Market Risk를 카바하는 Tier Ⅰ의 250% 범위내일 것.

2) 그 결과, 신용Risk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frac{\text{Tier Ⅰ} + \text{Tier Ⅱ} + \text{Tier Ⅲ}}{\text{Risk Assets(신용Risk규제)} + \text{Market Risk} \times 12.5\%} \geqq 8\%$$

※주 : 전술한 두 규제의 평균을 합하여 하나로 계산되게 Market Risk량에 8%의 역수(逆數)를 곱한다.

3) 위의 ① 표준적 접근법과 ② 내부모형 접근법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여러 Risk Factor Category 마다 어느 방법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① 차후 단계적 내부모형 접근법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은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각국의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탄력적인 취급이 가능함.

② 표준적 접근법에서 내부모형 접근법으로 이행(移行)한 은행은 원칙적으로 표준적 접근법으로 후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6) 향후 스케줄 : 1997년말 시행함.

2. 기업회계의 투명성(Transperency)과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기업윤리 제고

앞서 말한 은행에 대한 BIS의 자기자본규제와 은행의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등을 감안한 BIS의 바젤위원회 수정안의 1997년내 시행은 기업회계의 투명성(Transperency)과 기업의 부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까지를 포함한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가 시행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700여개의 사장회사와 그 가운데서도 30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력업체와 계열기업 상장회사들은 좋던 싫던 간에 만일 한국증권시장에서 직접금융(Equity Financing)을 얻어 쓰려면은 앞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기업공시제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다름 아니라 외국의 기관투자가, 특히 연금기금이나 투자신탁 등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0여개의 우수기업들(Blue Chips)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평가제도(Valuation), 그리고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Balance Sheets)분석방법에 따라 외국의 경쟁기업과 비교 대사(Reconcile)해서 투자기준을 정하고 과대평가(over-valuation)되어 있는 기업회계는 시정해서 엄격한 「주가수익율(Price Earnings Raio)」나 PBR, Cash Flow Analysis 등 여러가지 선진기법으로 재평가해서 컴퓨터 트레이딩을 통하여 가차없이 매매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s),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 등의 발행은 물론이고 변동금리부 채권(Floating Rate Note) 등의 채권발행에서도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의 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등의 공평무사한 공시제도는 그 발행여부, 격차(Rating), 표면금기 및 여러조건, 예컨대 Call Option이나 Put Option 등 옵션거래조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97년말 본고에서 언급한 BIS 자기자본 규제의 개정안이 선진 G-11나라들의 주요은행에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이 즐겨 찾았던 세계 일류 은행은 물론이고, 한국의 7대은행등을 비롯한 여러은행들도 외화의 고갈로 해외 일류은행에서 차입해 올때에 그 은행자신이 BIS 규제에 걸려서 차입을 못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디에서 귀중한 외화며, 원화까지도 차입해 올 수 있을지,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기업윤리 제고에 모두 회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간곡하게 간청하는 바이다.

3. OECD의 뇌물방지관련 규정

1) 주요 논의 경과

1992년 OECD 이사회는 CIME에 외국공무원에 제공되는 뇌물의 세제상 취급도 다루도록 지시하였다.

1996년 4월 OECD 이사회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조세공제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하여 뇌물의 조세공제를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1997년 OECD 각료 이사회가 채택한 뇌물방지 관련 기업의 회계기준, 외무감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원칙에 합치되도록 회원국들이 자기나라의 법규및 관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10]

2) 주요 논의 쟁점

가. 회계측면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①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상세한 입·출금 기록을 유지하고 부외거래를 금지한다. 중대한 우발채무(Contigent Liability), 예컨대 지급보증같은 것은 공시(Disclosure)하며, 회계상 누락, 조작등에 대해서는 제제한다.

② 독립적인 외부감사

외부감사용 자료제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감사인의 경영진 및 당국에 대한 뇌물수수행위 또는 징후의 보고를 의무화한다.

③ 내부통제의 강화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독립식 통제기구의 설치를 장려하고 직업윤리 준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확보하며, 연차보고서에 뇌물방지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나. 항목별 검토내용

①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a. 상세한 입·출금 거래기록 유지 및 부외거래 금지

기업회계 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2조는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준 제3조 제1호는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과 명료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총론적으로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의 유지와 부외거래의 금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회계감사준칙 354에는 부외부채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회계제도의 특성이나 기준의 포괄적 체계상 위의 현행 규정이 적절하고, 회계기준 강화라는 OECD 권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만약 필요하다면 명시적인 의지의 천명이라는 차원에서 기금 제2조에서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조항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0) 안건회계법인 이정희 회계사, OECD 권고안에 대한 「기업회계 및 조세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 의견」, 1997.

b. 중대한 우발채무의 공시

기준 제90조(보충적 주석사항) 제14호 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성 충당금에 대하여는 기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 준칙 354(부외부채에 대한 감사 및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항의 검토), 460(불확실성과 기업회계기준 위배), 470(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에서 우발채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OECD의 권고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다고 사려된다.

c. 회계상 누락, 조작등에 대한 제재

위의 부외거래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 제2조와 제3조 제1호에서 기업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재무회계의 목적과 회계과정에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회계상 누락, 조작 및 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준칙 330은 부정과 오류에 대한 정의, 이들의 발견에 대한 책임, 이들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의 감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15조 및 제16조(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업무), 제17조(손해 배상책임), 제20조(벌칙) 등을 통하여 회계기록상의 누락, 조작의 적발과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상의 현행 규정으로 회계기록상의 누락, 조작 및 사기에 관한 충분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독립적인 외부감사

a. 외부감사용 제출자료의 적절성 확보

외부감사인에 제출되는 자료의 적절성 확보차원에서 외감법 제16조(검사인의 권한)는 "검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준 내지 준칙에서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형성을 위한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감사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실물확인, 입회, 조회,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자료제출 거부 및 방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유보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정상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되는 자료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b.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체제의 강구, 유지

현행 법령 및 규정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법 제10조(특정한 사항에 대한 직무제한) 및 제12조의 8(특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제한), 외감법 제3조 제3항(이해관계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회계감사 기준 제7조(감사인의 독립성), 회계감사준칙 220(감사인의 정신적, 외관상 독립성) 및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 OECD 권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c. 감사인의 경영진에 대한 뇌물수수행위 및 징후의 보고의무

외감법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 준칙 333은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 본래의 목적과 방법론에 비추어, 실제로 국외에서의 뇌물공여 등 보고대상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의 관련조항에 뇌물공여의 징후의 발견시에도 역시 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회계감사준칙 333에도 부정의 범주에 뇌물공여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이와 함께 뇌물공여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별도의 특정한 검사절차 및 책임한계의 기준을 마련하면 OECD 권고안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d. 감사인의 당국에 대한 뇌물공여 징후의 보고의무 부과

외감법 제9조는 "감사인 등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 제8조는 "감사인이 감사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뇌물공여 징후에 대한 당국에의 보고의무는 상기한 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업무 및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회사의 관련내부기관을 통하여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과, 외감법 제9조의 단서규정을 원용하여 당국에 보고하는 안 등을 선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내부통제의 강화

a. 적절한 기업내부통제 제도의 수립

회계감사준칙 353은 "내부통제구조는 회사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설정된 모든 방침과 절차로서, 통제환경, 회계제도 및 통제절차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경영자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증권관계 법령에는 상장법인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내부 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 감사인의 평가의견서를 사업보고서 제출시의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시행키로 하고 있다.

b. 독립적 통제기구 설치 장려 :

-감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면 권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c. 직업윤리 준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 확보:

-현행 회계관련법규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윤리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d. 연차보고서에 뇌물방지관련 내용의 공시 :

-상법상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효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제도 평가보고서로 대체(代替)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Ⅳ. 맺는 말

우리는 기업윤리의 제고를 위한 당위성(Sollen)을 살펴본 다음, 기업내부로부터의 변화로서 이익추구와 사회적 책임, 시스템의 결여와 Corporate Governness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업외부, 해외로 부터의 국제화, 세계화의 결과로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공시제도(Disclosure)와 OECD의 뇌물방지관련 규정 등을 통한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준수에 의한 기업윤리제고의 불가피성을 주로 기업회계 내지는 은행회계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맺는 말에 대신하여 T. 도날드슨의 기업윤리제고를 위한 제안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11]

기업윤리재고는 첫째 법적인 통제, 둘째 기업의 획기적 개혁, 셋째는 위 두가지를 절충시킨 루소(Rousseau)식의 「강제화된 자율(Enforced Autonomy」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하는 것(Forced to Be Free)"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때때로 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세번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자기의 변화유형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조직 구성원 사이의 권력 이동.

둘째, 기업내부의 규정과 절차의 확립.

세째, 공식적인 조직 구조의 변경.

이상 첫째 현상은 「기업민주주의(Corporate Democracy)」를 배태하고, 이사회 구조의 변질과 이사회 구성원들간의 권력이동이 일어나서 '오우너'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대표이사의 독주형 경영이 점차 감퇴할 것이다.

둘째의 기업내부규정의 확립면에서는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사회 내지는 종업원들의

11) T. 도날드손, 류장선역, 「기업윤리」, 법문사, 1990, pp. 275~330.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 Korea Fund에 종사하는 임원들이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SFC)의 권고에 따라 수행하듯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윤리 지침이 10계명같이 준수되면 '오우너'나 대표이사로 부터의 비윤리적 명령이나 압력에 새롭게 대항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바탕은 미국의 회계기준인 GAPP이나 FASB가 제정한 재무회계지침을 준수하는 도덕적, 윤리적 바탕이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기준과 절차의 시행은 기업의 전략목표와 정책보고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두가지의 변화의 토대위에 마침내 기업의 경영구조는 외형극대화와 자사이익 극대화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초현대기업으로 발돋움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기업의 앞날의 성장과 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노무라증권(주) 발행, 「자본시장 Quarterly」, 1977년 여름호.

안건회계법인 이정희 회계사, OECD 권고안에 대한 「기업회계 및 조세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997.

이재웅, 「기업법 원론」, 법문사, 1997.

이재웅, 「외환 및 파생상품론」, 법문사, 1997.

이재웅, 「첫닭 울때, 새벽돌 한 알」-금융생활 반세기- 삶과 꿈, 1996.

T. 도날드슨, 류장선 역, 「기업윤리」, 법문사, 199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Review", Basil, 1996.

Basil Committee on Bankinking Supervision,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January, 1966.